# 의과대학 발전기금 관리 규정

〔신설 2011년 9월 5일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(이하 “의과대학”이라 함)의 발전을 위한 의과대학 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의과대학으로 출연되는 발전기금과 그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제위원회를 적용한다.

**제3조 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“발전기금”이라 함은 의과대학 교육, 연구 및 진료 등 의학발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을 통칭하며 현금•부동산•유가증권 또는 연구•업무용 물품을 포함한다.

**제4조 (발전기금의 관리)** 발전기금은 의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
**제5조 (발전기금의 종류)** 발전기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① 일반기금 : 기부자가 사용 용도나 그 집행 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부한 발전기금

② 지정기금 : 기부자가 장학금•건축비•연구비 등 사용용도나 집행 부서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

**제6조 (의과대학 발전 및 기금관리위원회)**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발전 및 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7조 (회의)**

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학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 단, 발전기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 (재정)** 위원회의 재정은 의과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발전기금에 서 발전기금의 홍보, 발전기금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, 발전기금 출연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**제9조 (의과대학 후원회)**

①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학부모, 교우, 전•현직 교수, 사회저명인사, 유관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후원회의 조직,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의과대학 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

**제10조 (발전기금의 접수 관리)**

① 일반발전기금과 지정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는 의과대학 사무팀에서 관장한다.

② 수증물품은 의과대학 사무팀과 상호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.

③ 부동산의 수증은 의과대학 사무팀에서 관장하고,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처리는 법인에 의뢰한다. 이때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.

**제11조 (기금의 집행 및 보고)**

① 발전기금의 집행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

한다. 단, 장학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
② 지정기금은 10%의 간접경비를 부담하고 간접경비는 일반기금에 귀속시킨다.

**제12조 (영수증 등의 발급)** 현금 또는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학장명의의 영수증을 의과대학 사무팀에서 발급하고, 부동산, 도서자료, 고서화, 실험기자재, 기타 물품 등의 기부자에게는 학장 명의의 수령증을 발급한다.

**제13조 (기부자에 대한 예우)**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과대학 발전 및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**제14조 (기부 유치자에 대한 보상)**

1. 발전기금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1,000만원(연간 누적액 포함)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자에게는 기금조성액의 5%(지정발전기금은 4%) 범위 내에서 연구비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2. 10억 원 이상의 고액 유치자에 대한 보상율은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정하되, 장학기금 유치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3.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발전 및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**제15조 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